

월간 거래가격

2026

7



대한건설협회 www.cmpi.or.kr

- 1970년 10월 7일 등록(제 라-1362호) / 2006년 7월 28일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제06-2호)
- 창간일자 1962년 11월 / 매월 1일 발행 / 국가데이터처승인건설업임금조사기관



고무 팽창형 앵커볼트 하이브리드 앵커볼트 고무 앵커 너트

방수성·내진동성능·내충격성능

건축 및 아스팔트 도로 구조물 고정용

고무 팽창형 앵커볼트 시스템

+ 카스토퍼 | 시선유도봉



고무 팽창형 앵커볼트 특징점



방수 성능

천공 홀 내부 수밀 성능을 강화하여 앵커볼트 천공 홀을 통한 누수 방지



고정력 향상

슬리브 + 고무 팽창 메커니즘 적용, 천공 홀 면접촉 고정 구조로 기존 앵커 대비 높은 고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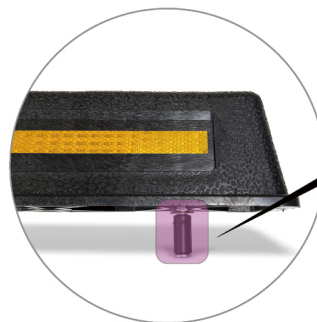
내충격 성능

고탄성 고무 패킹관이 외부 충격 및 진동 흡수하여 앵커 뺏힘 방지



용이한 유지보수

기계적 결속부 손상 없이 설치 및 해체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유지보수성과 작업 효율성 향상



고무 팽창형 앵커볼트 + 카스토퍼(주차스토퍼)



고무 팽창형 원볼트 고정 시선유도봉

16 2026년도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자료제공 : 한국건설자원협회)

(단위 : 원/톤)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페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콘크리트	31,142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	32,166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써 페콘크리트,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9,571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60,891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가연물5%)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72,721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가연성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88,715
	기타+가연성	불연성을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 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 불가 (폐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192,887

[해설]

- ①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 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 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 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8-2-13 대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 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 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페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 진행 시, 적용단가의 15%를 할증하여 적용함
- ⑧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6.1.1부터 적용)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자료제공 : 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30km	35km	40km	50km	60km	비 고
건 설 폐 재 류	24톤 덤프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890	3,890	3,890	3,890	3,890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페벽돌, 페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운반비	16,450	18,380	20,240	24,050	27,800	
			계	20,340	22,270	24,130	27,940	31,690	
	15톤 덤프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890	3,890	3,890	3,890	3,890	
			운반비	19,700	22,170	24,710	29,810	34,740	
			계	23,590	26,060	28,600	33,700	38,630	
	4.5톤 덤프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890	3,890	3,890	3,890	3,890	
			운반비	37,430	42,760	48,150	59,400	70,680	
			계	41,320	46,650	52,040	63,290	74,570	
	2.5톤 덤프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900	3,900	3,900	3,900	3,900	
			운반비	61,280	70,750	79,570	97,570	116,350	
			계	65,180	74,650	83,470	101,470	120,250	
혼 합 건 설 폐 기 물	24톤 암물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6,420	6,420	6,420	6,420	6,42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61,880	65,710	69,790	78,590	86,620	
			계	68,300	72,130	76,210	85,010	93,040	
	16톤 암물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6,420	6,420	6,420	6,420	6,420	
			운반비	74,930	80,360	87,170	98,590	111,400	
			계	81,350	86,780	93,590	105,010	117,820	

- 주)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5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재활용위탁비, 최종처리비,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호트리진 상태로서 1.6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를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 2.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물트럭(적재용 용량 30㎡), 16톤 암물트럭(적재용 용량 2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의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
8.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기물(24톤 덤프트럭) 60km이상 km당 단가: [27,800(60km운반비) - 24,050(50km운반비)] ÷ 10km = 375원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800원(60km운반비)+(375원 × 10km) = 31,550원
9. 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2026.1.1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함.